

#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(2023.3.1.)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
- 나. 학대와 가정에서의 분리 등으로 신체적,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개요

- 시설명: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
- 소재지: 서울시 동대문구(비공개시설)
- 시설규모: 연면적 114,52㎡(대지 17,593.5㎡분의 45.32, 공동주택 2층)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: 「꿈자람 학대피해아동 쉼터」 운영 및 관리
  -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
  - 학대피해아동 교육·특기적성·문화체험 등 생활 지원
  -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
  -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
- 위탁기간: 2023. 6. 1. ~ 2028. 5. 31.(5년)
  - ※ 현운영법인: (사)모래놀이상담협회(위탁기간: '18.4.10.~'23.3.1.)
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 - '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적정('23.1.17.)
- '23년 소요예산(안): 345,498천원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아동복지법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(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)
 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(관리 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  -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 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 -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된 시설로, 현재 운영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위탁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[아동복지법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]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##### [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, 5항(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)]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(관리·운영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]

-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: 예산변경 필요

- 2023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함

※ 기 편성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5,498천원 중 민간위탁 선정 후 인수·인계시까지 지출예산을 제외한 201,540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필요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: 아동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고경미 (☎2122-5172)